

1. 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및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 등 가입 여부 확인 절차·방법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 교육의 내용·시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마련(안 제7조의4, 별지 제10호의7서식)
-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교통안전 교육 시행 방안 마련(안 제7조의5, 별지 제14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 3) 행정규제 : 없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들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일이 10일을 경과하지 않은 서류에 한한다)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당해 보험등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발급일이 10일을 경과하지 않은 서류에 한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보험등의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등의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이 조에서 “소화물사업자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나.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

하기 전까지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 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들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 이용환경의 미비, 보험기관 등의 처리 지연 및 확인 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들이 보험등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5 영업일의 범위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들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보험등 가입확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6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사본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① 법 제19조의6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소화물 배송 요령에 관한 사항

4. 운송수단 응급처치방법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가목에 따른 교육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 또는 영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 교육실시기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의7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5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보험등 가입확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등 가입확인 정보시스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2 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사본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 계약을 체결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이용 권한 부여 → 시스템 이용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제 호

교육 이수증

- 성 명:
- 생년월일: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 . ~ . . . (시간)

위 사람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실시기관의 장

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등은 법 제19조의5제1항	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	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	
		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	
		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	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	
		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만,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	의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화물배
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운행
하는 이륜자동차 등이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일이 10일
을 경과하지 않은 서류에 한
한다)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당해 보험등의 보상 대
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
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서류(발급일이 10일을 경
과하지 않은 서류에 한한다)
-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까지 소화물배송대
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
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
인한 보험등의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
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
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

협등의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이 조에서 “소화물사업자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나.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들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 이용환경의 미비, 보험기관 등의 처리 지연 및 확인 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신 설>

자등이 보험등 가입여부를 확인
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5 영
업일의 범위에서 확인하여야 한
다.

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등은 법 제19조의5제1항
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
호의7서식의 보험등 가입확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
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
업자: 제6조제2항에 따른 소화
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서 사본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
스인증사업자와 생활물류서비
스에 관한 업무 계약을 체결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교육 등) ① 법 제19조
의6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

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
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
상으로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소화물 배송 요령에 관한 사항
4. 운송수단 응급처치방법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칙」 별표5 제4호가목에 따른
교육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1
9조의6제3항에 따른 생활물류
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 또는 영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 교육실시기관은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
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
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교
육이수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을 발급하여야 한다.

